

인간대상연구 심의면제 Checklist

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
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.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·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
-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

